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 
번호 제35호

2017. 6. 8.

건명	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원스톱민원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5. 23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5. 23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익적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함.

### 주요내용

-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무허가 축사 개선대상 건축물에 대한 기준 완화(안 별표 4)

###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건축법」 제58조 및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80조의2(별표 2)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